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
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441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생계지원금의 월 지급금액 등 규정(안 제8조의3)

나.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안 제8조의4)

다. 생계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3조)

라.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등에 관한 권한을 관할 보건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하고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
(안 제1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생계지원금)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제8조의4(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의3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급 신청서에 소득·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수급권 확인·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조사·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

제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④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훈급여금” 및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참전명예수당,”을 “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참전명예수당”을 “참전명예수당 및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으로 한다.

3의2. 법 제6조의3, 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지급,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질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신청의 촉진

부 칙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의3(생계지원금)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u>
<u><신 설></u>	<u>제8조의4(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의3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급 신청서에 소득·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u> <u>③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수급권 확인·심사</u>

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조사·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④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훈급여금” 및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제13조(참전명예수당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참전명예수당, 법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및 법 제8조의2에 따

제13조(참전명예수당등의 환수)

① ----- 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

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참전명예수당등”이라 한다)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등을 받은 사람(법 제37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참전명예수당등의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③ (생략)

제18조(권한의 위임)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권한의 위임) ① -----

-----.

<신 설>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3의2. 법 제6조의3, 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지급,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질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신청의 촉진

② -----
----- 참
전명예수당 및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411